

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9. 3.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9. 3. 30
- 다. 상정일자 : '99. 3. 30

(제73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배병선

나. 개정사유

-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"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" 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
- 관계법령 : 도로법 제44조 제4호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언태)

- 본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제2항, 제86조 2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한 군 조례 제1510호로서
-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법 제44조 제4호 "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"를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며, 군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 (점용료의 감면)</p> <p>① ~ ③ (생 략) <u>(신설)</u></p>	<p>제6조 (점용료의 감면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</u></p>